
2021학년도 자체 정기감사 결과

2022. 1. 26.

세한대학교 자체감사반

1. 감사개요

- 추진근거 : 세한대학교 「감사 규정」
- 감사기간 : 2021.11.24.(수)-11.26.(금), 12.01.(수)-12.03.(금) (6일간)
- 감사인원 : 8명(외부위원 1인 포함)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지적건수

합 계	개선요구	시정요구	징계요구
건수	3	5	0

나. 세부지적 및 처분

연번	지적사항	처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지난연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나, 2019.09.01.부터 2021.08.31.까지의 기간 동안 증명료 현금 발행금액에 대하여 교무입학처 담당자들이 813,000원을 임의 보관하다가 교비회계에 미 입금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요구 : 현금 입금 및 증명료 관리체계 마련 요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나, 2017.03.01.부터 2021.08.31.까지의 기간 동안 당진캠퍼스 천안, 아산지역 통학버스비를 현장 수령 후 전달자인 버스 기사와 담당자 간에 현금 인수인계와 관련된 어떠한 확인 증빙 없이 임의 보관하다가 64,097,5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요구 : 통학버스비 수납 관리체계 보완 마련 요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7조 및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근거하여 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대학은 소모품을 제외한 비품관리를 위한 「비품관리규정」만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재물조사에 있어 동 상위 법령의 조사 기준일을 “학년도 말”과 달리 “회계연도 말까지 실시한다.”, 실시 주체를 “물품관리자”와 달리 “사용책임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또한 조직개편 또는 업무환경 등의 변화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비품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동 규정 별표2의 내용에 현행화된 직제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요구 : 비품관리규정 개정 요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요구 :

연번	지적사항	처분
	<p>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대학교 「비품관리규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재물조사는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고 정기재물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며, 회계연도 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9학년도 재물조사를 2020.07.27.부터 2020.08.25.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각 행정부서 및 학과에 협조전으로 재물조사 실시계획을 시행한 후 사용부서의 재물조사 실시여부 및 입회 확인, 재물조사결과표 제출, 재물조사 결과 집계작업 및 결과보고 등 재물조사 일정에 계획된 내용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재물조사는 회계결산과 연동되는 업무로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감하여 결과보고를 하여 결산재무제표의 해당 계정과목(집기비품)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나 회계결산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p>	<p>2016-2020학 년도의 재물조사를 통해 회계결산에 반영 요구</p>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복무규정」 제38조(인계·인수), 제40조(인계·인수서)와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보, 면직 등의 명령을 받아 사무인계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첨부하여 후임자 또는 부서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06.08. 및 2021.10.07.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요구 : 자체교육 실시 및 인수인계서 제출 요구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복무규정」 제38조(인계·인수), 제40조(인계·인수서)와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보, 면직 등의 명령을 받아 사무인계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첨부하여 후임자 또는 부서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04.01., 2021.04.30. 및 2021.06.08.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요구 : 자체교육 실시 및 인수인계서 제출 요구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복무규정」 제38조(인계·인수), 제40조(인계·인수서)와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보, 면직 등의 명령을 받아 사무인계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첨부하여 후임자 또는 부서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08.31. 및 2021.09.01.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요구 : 자체교육 실시 및 인수인계서 제출 요구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원복무규정」 제38조(인계·인수), 제40조(인계·인수서)와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보, 면직 등의 명령을 받아 사무인계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요구 : 자체교육 실시 및 인수인계서

연번	지적사항	처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첨부하여 후임자 또는 부서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05.01.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출 요구